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10. 8 선고 2024가단106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이성진

변론 종결2024. 8. 13.

판결 선고2024. 10.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19. 2.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9. 3. 19. 접수 제123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E는 D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582230호)를 하였고, 2016. 11. 11.경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유한회사 E에게 7,416,705원 및 그 중 2,116,078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2. 11. 16.경 유한회사 E로부터 위 판결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그 무렵 D에게 승계집행문 등본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

다. D의 부(父)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10. 24.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 자녀인 피고, D, H, I가 있었다.

라. 한편,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8. 10.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9. 3. 19. 접수 제123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는데, 당시 이 법원 등기계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한다)에는 그 작성일자가 2019. 2. 19.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망인 사망일인 2018. 10. 24.경 이루어졌거나 늦어도 2019. 1. 31.경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4. 2. 6.경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등기계에 접수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그 협의 일자가 2019. 2. 19.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8. 10. 24.은 상속협의분할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하는 망인의 사망일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처분문서 기재와 다르게 피고가 주장하는 2019. 1. 31.경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J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 등으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인바, D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와 D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D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학승

별지